

구성하였으며, 또한 위원회는 환경의 보전 또는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의 협의회 및 2개의 분과위원회 정원의외에 별도정원의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안 제8조의2에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을 근거로 기타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됨.

○ 제1조(목적)에 환경오염 감시활동이 주요 목적중의 하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기능중 일부로 되어 환경오염 감시 활동의 축소나 경시 우려가 있고, 집행위원회 구성인원 25명중 당연직위원으로 시공무원 7명이 자동적으로 포함하게 되어 집행위원회가 서울시정부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커 기존의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설치된 기본정신이 시민참여·자율이 훼손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됨.

○ 동 조례개정안이 11월 20일~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1건의 의견도 없었다는 점과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여 시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널리 듣도록 한다는 점에서, 또한 위원장 3인 공동제로 되어 책임소재의 불명확, 위원장간의 권한·조정상의 문제, 사무담당위원의 실질적인 유급직화 등은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임.

-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 6. 소위원회 심사보고요지 : 없음(미구성)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8. 소수의견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서울의제 21의 실천 및 이행상황 점검 등 국제연합 지속발전위원회의 활동과 연계하여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녹색서울시민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지속가능"이라 함은 지역개발 사업 등을 경제적 효과·사회적 형평 및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 추진함으로써 다음세대의 삶의 질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시정을 위한 보전과 개발의 통합 조정에 관한 방향제시 및 자문
2.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여한 주요 정책·계획·제도 등의 지속가능성 평가·자문
3. 서울의제 21의 실천 및 이행상황 점검, 자치구의제 21 추진에 관한 의견제시 및 자문
4. 환경개선·보전 프로그램 개발, 환경교육·홍보, 환경 감시활동 등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3인을 포함한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환경관리실장·교통관리실장·시정기획관·산업경제국장·도시계획국장·건설국장·주택국장과 환경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을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으로 각각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 2인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자는 시민을 대표하는 자 1인과 기업을 대표하는 자 1인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부위원장 3인과 감사 2인을 두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③부위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의제 21실천협의회 회장과 2개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감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집행위원회)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p>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p> <p>②집행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당연직위원, 위촉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담당위원 등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된다.</p> <p>③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속 가능한 개발전략 수립</li> <li>2. 시정분야별 친환경적 지침 제시</li> <li>3.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된 안전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자문 및 의견제시</li> <li>4.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li> </ol> <p>④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월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p> <p>⑤집행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7조(사무처리 등)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담당위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담당위원은 위원장이 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p> <p>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8조(분과위원회 등)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서울의제 21 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지속발전정책분과위원회, 환경홍보·교육분과위원회를 둔다.</p> <p>②협의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울의제21실천협의회: 서울의제 21의 실천 및 이행상황 점검, 자치구의제 21 추진에 관한 의견제시 및 자문, 시민단체 등의 시·자치구간 협력체계 구축·운영</li> <li>2. 지속발전정책분과위원회: 보전과 개발의 통합·조정에 관한 정책대안 제시, 제시된 시정분야별 친환경적 지침에 따른 시정구현상황 평가, 집행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한 검토 및 대안제시</li> <li>3. 환경홍보·교육분과위원회: 환경보전 홍보·교육, 환경개선 프로그램개발, 환경오염감시 활동</li> </ol> <p>③협의회와 각 분과위원회는 의안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시의 관련과장을 위원으로 참여</p>	<p>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은 위원회 위원정원 외로 한다.</p> <p>④협의회는 회장 1인과 총무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 지속발전정책분과위원회와 환경홍보·교육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과 총무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의회장과 분과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협의회장과 분과위원장이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p> <p>⑤협의회장과 분과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와 분과위원회에 협의회위원과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⑥협의회·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8조의2(기타 협의회의 설치) ①위원회는 제8조의 협의회 등외에 환경을 보전 또는 복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관련 협의회를 둘 수 있다.</p> <p>②제1항의 협의회 위원은 환경에 관하여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원회 정원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기타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0조제3항중 "분기마다 1회"를 "연 2회"로 한다.</p> <p>제12조중 "사무국"을 "환경관리실"로 한다.</p> <p>제1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4조제2항중 "계장"을 "사무관"으로 한다.</p> <p>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16조(지속가능성평가 등) ①위원회는 시장이 부의한 주요정책·계획·제도 등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평가·자문한다.</p> <p>②위원회는 보전과 개발을 통합·조정하는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수 있다.</p> <p>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16조의2(서울의제 21 실천 등) ①위원회는 서울의제 21 실천을 위한 활동과 그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p> <p>②위원회는 자치구의제 21 추진에 관한 의견</p>
--	--

을 제시하고 자문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서울의제 21 및 자치구의제 21 실천을 위한 시민단체 등의 시·자치구간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제1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를 동조제5호로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환경보전캠페인 및 프로그램 개발  
 4.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고발 등 감시 활동  
 제18조 내지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중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을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로 한다.  
 제24조중 “감시활동”을 “위원회 등의 활동”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담당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410
----------	-----

1999. 12. 28  
 도시관리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청 제출
  - 회부일자 : 1999년 10월 9일 회부
  - 상정일자
    - 제11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1999년 10월 15일) 상정, 소위원회 구성
    - 제17회 정기회 제4차 도시관리위원회 (1999년 12월 22일) 소위원회 심사보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주택국장 양갑)
  - 가. 제안이유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신축건축물

및 특례제한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등의 특례를 일부 조정하고, 건축법('99.2.8) 및 동법시행령('99.4.30)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신축건축물에 기존건축물이 철거·멸실된 후 세대수를 증가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추가(안 제2조제1호)

※ 현행 : 나대지에 신축 또는 기존건축물이 철거·멸실된 후 특례제한 건축물 규모를 초과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에 「환지방식사업」을 추가함.(안 제8조의2)

○ 환지방식사업 : 주거환경개선계획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하는 사업

○ 대상지구

- 기존도로 폭 2미터이상에 접한 주택 접도율이 50퍼센트 이하인 지구
- 대지면적이 2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가 대상지구 전체 필지수의 2분의 1 이상인 지구
- 도로 형상이 부정형하거나 세장형(대지 폭 3미터미만을 말한다)으로 건축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경우가 대상지구 전체 필지수의 2분의 1 이상인 지구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을 60제곱미터로 신설(안 제19조)

□ 특례제한건축물 및 신축건축물의 높이제한 변경(안 제21조)  
 건축법의 규정(수평거리의 1.5배 초과금지)에 의하던 것을 각 부분의 높이가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20세대이상 공동주택건설사업인 경우는 건축물의 규정에 의하도록 함.

□ 특례제한건축물 및 신축건축물의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변경(안 제21조의2)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던 것을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각 부분이 정북방향의 인접